7. 海外建設促進法改正(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3－85號 1993. 5. 29

1. 개정취지

해외건설시장의 여건이 급격히 변화되고 해외건설업체들의 능력과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자율과 창의에 의한 진출체계의 정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해외건설 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요인을 대폭 완화하고 해외건설업의 포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해외건설의 활성화를 기하고 일관성있는 지원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해외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그 등록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여 건실한 중소건설업자들이 해외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적인 등록갱신제를 도입하여 등록기준의 유지 여부를 사후관리함으로써 해외건설업자들의 건실화를 유도함.

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방지시설업자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도 해외건설업 등록을 할 수 있는자에 포함함.

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을 해외건설업의 등록없이도 해외건설진출이 가능한 대상에 포함함.

마. 자율적인 해외건설진출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 도급한도액 제도를 전액 폐지함.

바. 해외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도급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완화하여 해외공사수행계획의 신고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한 해외건설업자는 그 설립현황을 보고하도록 함과 동시에 해외공사 수행계획을 신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참조 : 해외협력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전화 503-739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